

GANGJIN 

Web Contents



• 복지시책및제도

- 인권헌장
- 장애인등록안내
- 복지시책및제도**
- 장애인복지시설
-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
-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영상

◦ 보건복지부

- 중앙행정기관
- 지방자치단체
- 민간기관

장애인연금지급

지원대상

-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
- 선정기준액 :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122,000원,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,952,000원

지원내용

- 기초급여(18~64세)
- 단독 323,180원 지급
- 부부 517,080원 지급
-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
- 단,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
- 부가급여 ※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※ 읍·면에 신청

부가급여안내

구분	부가급여(개정)	
	18~64세	65세 이상
기초수급자(재가)	8만원	403,180원
기초수급자(시설)	-	-
차상위계층	7만원	7만원
차상위초과자	2만원	4만원

장애수당지급

지원대상

-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3~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일부 반재가) 및 차상위계층
-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

지원내용

-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6만원
- 차상위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6만원
-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: 1인당 월 3만원

※ 읍·면에 신청

장애 아동 수당지급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

지원내용

-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22만원
-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11만원
- 차상위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17만원
- 차상위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11만원
-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: 1인당 월 9만원
-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: 1인당 월 3만원

※ 읍·면에 신청

장애인 자립 자금대여

지원대상

- 성년(만20세 이상)등록 장애인
- 소득기준: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초과 100%이하 가구
-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지원내용

- 무보증대출: 가구당 1,200만원 이내
- 보증대출: 가구당 2,000만원이내
- 담보대출: 5.000만원 이하
- 대여자: 2%(고정금리)
- 상환방법: 5년 거치 5년 상환

※ 읍·면에 신청

장애인 의료비지원

지원대상

-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
-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
- (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)

지원내용

-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
- 본인 부담금 1,500원 중 750원 지원 (원내 직접 조제)
- 본인 부담금 1,000원 중 750원 지원 (그외에 경우)
- 2차,3차 의료급여기관진료
- 의료(요양)급여 비용총액 중 본인부담금 15%(차상위 14%)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
- (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)

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
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

지원내용

-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-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: 4만원
- 기타 일반 장애 : 1만5천원
-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※음·면에 신청

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

지원대상

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발달·언어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·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지원내용

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,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, 음성유도장치, 음성시계,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,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, 식사 도구, 젓가락 및 빨대, 머그컵, 유리컵, 컵 및 받침접시, 접시 및 그릇, 음식보호대, 기립훈련기, 헤드폰(청취증폭기), 영상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,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, 목욕 의자, 녹음 및 재생장치

※음·면에 신청

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

지원대상

-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, 직계손·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-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의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-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로 자동차

지원내용

-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(일부에 한함), 10부제 적용제외, 지방자치단체별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감면 등
-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

※음·면에 신청

GANGJIN
Web Contents

